
Policy and Law Report _Vol.17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1.~3.8.) -

March 8,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별첨1], [별첨2], [별첨3] 금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①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계획 점검 -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일자리 예산(14.9조원*)의 70% 이상 상반기 집행 계획 * 전체 일자리 예산 30.3조원 중 구직급여 등 집행시기가 정해진 의무지출 사업 제외 -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 4천명을 확대하여 금년 총 104.4만명을 채용할 예정 * 직접일자리 집행실적(만명) : ('22.1월) 65.9 (2월) 82.0 / ('23.1월) 66.4 (2월) 82.8 - 1분기에 92.4만명 이상 채용(전체 계획인원의 88.6%)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 ② 빈일자리 해소 방안 -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 * 미충원인원(반기별, 만명, 1인 이상) : ('21.3분기)13.5 ('22.3분기)18.5 -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하여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하여 일자리 매칭을 강화 * 제조업(조선, 뿌리),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업, 농업, 해외건설 - (조선업)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23년 2,000명),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 5천명 수준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 신속히 공급 - (보건복지업) 5년 이상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강도를 완화하여 인력유입 지원 - (물류업)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금년부터 방문동포(H-2)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농업) 도시 유희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년중 청년농 4천명을 선발하여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	2023-03-08

부처	내용	일시
	③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2023년말 기준으로 1.4만명의 생산인력 부족 전망. 이에 지난 2월 27일,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자체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 - 정부는 동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마련하여 조선업 원 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 계획 - 우선,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2년만기 총800만원)**을 신설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연령제한(45세) 폐지, 대상지역 확대(울산·거제 등 → 군산·부산) ⇒ '23년 2천명 목표 ** 상생협약 각 주체별 출연 → 재직자 임금 연300만원 확대 효과 기대 -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 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원하청·지자체·정부 공동 출연 → 근로자 학자금, 주택대출, 건강검진 등 복지지원 ** 현재 조선업 193억원 수준 조성·운영 중 → 연간 170억원 수준 추가 조성 목표 -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 * 하청이 35~39세 신규채용,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 채용장려금 월100만원씩 1년간 지급 -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 병행	2023-0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움 * 산·학·연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조실·문체부·교육부·방통위 등 참여	2023-03-02

부처	내용	일시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함 <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기본 원칙 민간 중심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개선 방향 <table><thead><tr><th>기존 규제 완화</th><th>규율 공백 해소</th><th>해석 유연화</th><th>지원근거 마련</th></tr></thead><tbody><tr><td> 메타버스 정의,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23~) </td><td> 신규 서비스 영역에서 규율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시기준 제도 도입(‘23~) </td><td>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23~) </td><td>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24~) </td></tr><tr><td>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자율규제 체계 도입 및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23~) </td><td> 가상공간에서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23~) </td><td></td><td></td></tr></tbody></table> 분야별 적용과제 <table><thead><tr><th>엔터테인먼트·문화</th><th>교육</th></tr></thead><tbody><tr><td> 공공저작물, 권리기간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실검형 DB 구축(‘23~) </td><td>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기준 완화(‘23~) </td></tr><tr><th>교통</th><th>디지털 거래·유통</th></tr><tr><td>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안전기술기준 마련(‘24) </td><td> 현실세계 상표가 메타버스에서도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 관련 제도 정비(‘23) </td></tr><tr><th>금융</th><th>공공</th></tr><tr><td> 메타버스 내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3~) </td><td> 경찰 업무 중 AR 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24) </td></tr></tbody></table>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메타버스 정의,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23~)	신규 서비스 영역에서 규율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시기준 제도 도입(‘23~)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23~)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24~)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자율규제 체계 도입 및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23~)	가상공간에서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23~)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공공저작물, 권리기간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실검형 DB 구축(‘23~)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기준 완화(‘23~)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안전기술기준 마련(‘24)	현실세계 상표가 메타버스에서도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 관련 제도 정비(‘23)	금융	공공	메타버스 내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3~)	경찰 업무 중 AR 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24)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메타버스 정의,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23~)	신규 서비스 영역에서 규율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시기준 제도 도입(‘23~)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23~)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24~)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자율규제 체계 도입 및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23~)	가상공간에서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23~)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공공저작물, 권리기간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실검형 DB 구축(‘23~)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기준 완화(‘23~)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안전기술기준 마련(‘24)	현실세계 상표가 메타버스에서도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 관련 제도 정비(‘23)																									
금융	공공																									
메타버스 내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3~)	경찰 업무 중 AR 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24)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범 분야 공통과제 15개와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등 총 30개 과제 발굴 ② 자율규제, 임시기준 등 메타버스에 적합한 신산업 규율체계 확립 추진 ③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및 교육 확대 등을 위해 범부처 공동 노력 ④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로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목록 (30개) > <table><tr><th>과제 목록</th><th></th><th>관계부처</th><th>일정</th></tr><tr><td colspan="4">◆ 범분야 공통 적용 과제</td></tr><tr><td rowspan="5">산업 활성화 기반조성</td><td>①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td><td>과기정통부, 문체부</td><td>'23~</td></tr><tr><td>② 메타버스 분야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이행</td><td>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td><td>'23~</td></tr><tr><td>③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준 제도 도입</td><td>과기정통부</td><td>'23~</td></tr><tr><td>④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td><td>과기정통부</td><td>'23~</td></tr><tr><td>⑤ 초고주파수 대역 전자파적합성 기준 정비</td><td>과기정통부</td><td>'25~</td></tr><tr><td rowspan="3">데이터 활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td><td>⑥ 공간정보 해상도 공개기준 규제 추가 완화</td><td>국토부</td><td>'25~</td></tr><tr><td>⑦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td><td>개인정보위</td><td>'23~</td></tr><tr><td>⑧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td><td>개인정보위</td><td>'25~</td></tr><tr><td rowspan="2">공정한 생태계 조성</td><td>⑨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td><td>문체부</td><td>'24~</td></tr><tr><td>⑩ 국경 간 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td><td>특허청, 문체부</td><td>'25~</td></tr><tr><td rowspan="5">사회적 수용과 이용자 보호</td><td>⑪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td><td>범부처</td><td>'23~</td></tr><tr><td>⑫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td><td>방통위</td><td>'23</td></tr><tr><td>⑬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td><td>법무부, 여가부, 방통위</td><td>'23~</td></tr><tr><td>⑭ 차별없는 포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td><td>과기정통부, 방통위</td><td>'23~</td></tr><tr><td>⑮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 마련 및 확산</td><td>과기정통부</td><td>'23</td></tr></table>	과제 목록		관계부처	일정	◆ 범분야 공통 적용 과제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①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과기정통부, 문체부	'23~	② 메타버스 분야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이행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23~	③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준 제도 도입	과기정통부	'23~	④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과기정통부	'23~	⑤ 초고주파수 대역 전자파적합성 기준 정비	과기정통부	'25~	데이터 활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⑥ 공간정보 해상도 공개기준 규제 추가 완화	국토부	'25~	⑦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23~	⑧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25~	공정한 생태계 조성	⑨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문체부	'24~	⑩ 국경 간 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특허청, 문체부	'25~	사회적 수용과 이용자 보호	⑪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범부처	'23~	⑫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방통위	'23	⑬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23~	⑭ 차별없는 포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방통위	'23~	⑮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 마련 및 확산	과기정통부	'23	
과제 목록		관계부처	일정																																																								
◆ 범분야 공통 적용 과제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①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과기정통부, 문체부	'23~																																																								
	② 메타버스 분야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이행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23~																																																								
	③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준 제도 도입	과기정통부	'23~																																																								
	④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과기정통부	'23~																																																								
	⑤ 초고주파수 대역 전자파적합성 기준 정비	과기정통부	'25~																																																								
데이터 활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⑥ 공간정보 해상도 공개기준 규제 추가 완화	국토부	'25~																																																								
	⑦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23~																																																								
	⑧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25~																																																								
공정한 생태계 조성	⑨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문체부	'24~																																																								
	⑩ 국경 간 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특허청, 문체부	'25~																																																								
사회적 수용과 이용자 보호	⑪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범부처	'23~																																																								
	⑫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방통위	'23																																																								
	⑬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23~																																																								
	⑭ 차별없는 포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방통위	'23~																																																								
	⑮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 마련 및 확산	과기정통부	'23																																																								

부처	내용				일시																																																			
	◆ 특정 분야별 적용 과제 <table><tr><td rowspan="3">엔터·문화</td><td>⑯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td><td>과기정통부, 문체부</td><td>'23</td></tr><tr><td>⑰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td><td>문체부</td><td>'23~</td></tr><tr><td>⑱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 도입 검토</td><td>문체부, 특허청</td><td>'23~</td></tr><tr><td rowspan="3">교육</td><td>⑲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td><td>교육부</td><td>'23~</td></tr><tr><td>⑳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확산을 위한 시설·설비 규제 완화</td><td>교육부</td><td>'23~</td></tr><tr><td>㉑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td><td>교육부</td><td>'24~</td></tr><tr><td rowspan="3">교통</td><td>㉒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td><td>경찰청</td><td>'27</td></tr><tr><td>㉓ 착용형 영상표시장치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td><td>경찰청</td><td>'27</td></tr><tr><td>㉔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td><td>국토부</td><td>'24</td></tr><tr><td rowspan="2">디지털거래유통</td><td>㉕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td><td>특허청</td><td>'23~</td></tr><tr><td>㉖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td><td>문체부, 특허청</td><td>'23~</td></tr><tr><td>금융</td><td>㉗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td><td>금융위</td><td>'23~</td></tr><tr><td rowspan="3">공공</td><td>㉘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관리·운영 기준 마련</td><td>경찰청, 소방청</td><td>'25~</td></tr><tr><td>㉙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td><td>경찰청</td><td>~'24</td></tr><tr><td>㉚ VR·AR 기기의 영내 사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td><td>국방부</td><td>~'25</td></tr></table>				엔터·문화	⑯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과기정통부, 문체부	'23	⑰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문체부	'23~	⑱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 도입 검토	문체부, 특허청	'23~	교육	⑲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교육부	'23~	⑳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확산을 위한 시설·설비 규제 완화	교육부	'23~	㉑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부	'24~	교통	㉒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경찰청	'27	㉓ 착용형 영상표시장치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	'27	㉔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국토부	'24	디지털거래유통	㉕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	특허청	'23~	㉖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문체부, 특허청	'23~	금융	㉗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23~	공공	㉘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관리·운영 기준 마련	경찰청, 소방청	'25~	㉙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경찰청	~'24	㉚ VR·AR 기기의 영내 사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방부	~'25	
엔터·문화	⑯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과기정통부, 문체부	'23																																																					
	⑰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문체부	'23~																																																					
	⑱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 도입 검토	문체부, 특허청	'23~																																																					
교육	⑲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교육부	'23~																																																					
	⑳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확산을 위한 시설·설비 규제 완화	교육부	'23~																																																					
	㉑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부	'24~																																																					
교통	㉒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경찰청	'27																																																					
	㉓ 착용형 영상표시장치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	'27																																																					
	㉔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국토부	'24																																																					
디지털거래유통	㉕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	특허청	'23~																																																					
	㉖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문체부, 특허청	'23~																																																					
금융	㉗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23~																																																					
공공	㉘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관리·운영 기준 마련	경찰청, 소방청	'25~																																																					
	㉙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경찰청	~'24																																																					
	㉚ VR·AR 기기의 영내 사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방부	~'25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 - 최초로 법제화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에 “5년간 170조원 전략적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임무중심, 민관협업 중심으로 투자시스템 혁신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음.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며,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임				2023-03-07																																																			

부처	내용	일시
	비전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책목표 주요 국정과제 충실한 이행 및 성과창출 투자목표 정부총지출 5%, 5년간 170조원 투자 기술목표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 80% → 85% 향상 전략 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① 전략기술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②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전략 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① 디지털 혁신 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② 기업역량 강화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③ 공급망 대응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 ④ 국민건강 증진 바이오 제초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⑤ 첨단국방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실현 전략 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① 기초연구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 ② 인력양성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 ③ 국제협력 규모·범위 확대, 지속 가능발전(SDG) 강화 ④ 지역혁신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⑤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기반 재난 안전·환경문제 대응 전략 4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민관협업 촉진 ① 기업지원방식 혁신 다양한 지원방식 확산, 민·관투자 연계성 강화 ② 기업수요 반영 정부 R&D 기획 투자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③ 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 선정 투자 ④ 국가전략기술센터 운영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⑤ 기술 스케일업 딥테크 육성을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R&D 체계화 ⑥ 다부처협업 강화 통합형 사업관리체계 우선 반영, 공동성과지표 설정 의무화 ⑦ 민군 협업 촉진 민관협력체 중심 협업 강화, 협업 방식 다변화 투자 효율화 ⑧ 범부처 플랫폼 투자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 운영 ⑨ 예타연계 강화 非예타사업 내실화 및 예타사업 우선 투자 ⑩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운영관리 효율화, 연구장비 개발역량 강화 ⑪ 지출 재구조화 유사·중복 낭비 최소화, 사업·과제 단가 확대	

부처	내용	일시
	• ’23년 제3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및 플랫폼 현장 자문단 구성 등 운영방식 개편 -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는 실효적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주요 업계·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전담반(TF)」을 구성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근거, △독려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자율규제 참여 유인,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우선 플랫폼 업계가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 독려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표성·전문성·객관성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외에도, 자율규제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성과를 과기정통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자율규제 활동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정기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자율규제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였음 < '22년 플랫폼 정책포럼 > < '23년 플랫폼 정책포럼(안) >	2023-03-07
보건복지부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이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함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 *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03-02

부처	내용	일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규모('21년) : (제약) 1.7% (의료기기)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 마련 -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先) 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 정립 -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혁신·필수 의약품)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 - 급여평가(심평원) - 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 < ‘품목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안) > 현행 식약처 허가 후 건보공단 약가협상까지 210일 소요 식약처 허가 (120일) → 심평원 급여평가 (150일) →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 복지부 건강심심 의약목록 고시 개선 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평가, 건보공단 약가협상 동시진행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약가협상 완료 ③ (디지털 헬스케어)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 -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지침)’의 가명처리 규정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 * 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주요 내용(안) :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연구의 IRB 심의 기준·방법 공용IRB 이용 대상 공동IRB 운영 시 IRB 선정방식·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부처	내용	일시
	-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예정 ④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재생의료기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 검토 <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절차 개선 > <pre> graph LR subgraph "현행" A[심의위원회 검토] --> B[심의위원회 심의결] B --> C[식약처 검토] C --> D[식약처 승인] end subgraph "개선" E[심의위원회·식약처 검토] --> F[심의위원회 심의결] F --> G[식약처 승인] end D --> H((임상연구 개시)) G --> H </pre>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 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⑤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22.7)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 -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	
금융위원회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함 * 3월중 분야별 간담회 총3회(핀테크-3.7일/데이터-3.14일/빅테크-3.21일) 개최 예정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2023-03-07

부처	내용	일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①은행권내 경쟁과 ②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③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④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임 핀테크 기업들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①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 (가칭: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 소규모 특화은행(예:소상공인·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 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인터넷 전문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②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 개설* 허용 *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③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예: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펀드도 포함)의 확대 * 현재 예금·보험은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중 ④ 온라인연계투자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 등 ⑤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3.7. 시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중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목공사업자, 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을 포함하여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11조제2항제5호)	2023-03-07
보건 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3.5. 시행)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됨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허가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기간, 방법 및 장소를 준수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보관을 대신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4조제1항, 제30조제4항 삭제,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 신설 등)	2023-03-0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술용역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 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안 제24조제2호) - 일반적인 용역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3.3억)을 적용하나, 건설기술 용역 등 기술용역은 기재부 고시금액(2.1억)을 적용 -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에서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으로 상향 -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②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 제한 강화 (안 제86조제1호) -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공사의 계약 이행 형태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활용 -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며 요건 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등”을 추가 - 시설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 의견 제시기간 :2023/3/7(화)~4/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제출	2023-03-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u>」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 (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②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안 제2조, 안 제8장의2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 (안 제52조) ④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로 확대 개편 (안 제57조) ⑤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안 제54조) ※ 의견 제시기간 :2023/3/6(월)~4/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2023-03-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상한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도록 개정('22.11.15)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담금 부과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책임보험료등의 100분의 1로 정함 (안 제31조) ※ 의견 제시기간 :2023/3/2(목)~4/1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2023-03-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2.11.15)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상 부과요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조항 삭제 (현행 제11조 삭제) ※ 의견 제시기간 :2023/3/2(목)~4/1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2023-03-0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외관작용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2023-03-03
정무 위원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인어서, 사적 보험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대부분은 보험상품 등 미래에 대한 위험보장보다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 등 현재의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재정의 고갈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공적 안전망에 부족한 사적 안전망이 더해져 노후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큼 이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미래의 위험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의 장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금융 소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1978년 과거 대면 모집이 주요 판매방식이었던 당시에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규제로, 비대면 모집 등으로 보험 판매방식이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023-03-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특별이익 제공’ 중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한하여 보험사가 3만원 이하 소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영업은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가 보험에 쉽게 접근하여 체험하도록 하여, 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저변을 넓히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98조제4호)	
	•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u>」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탁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상호금융업권”이라 함) 등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지역의 동법 비적용 조합에서 수신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 하였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운용 계획이 점검되어 그에 맞는 이자율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고객들에게도 가입 한도 및 가입 금액, 금리 수준 등 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용돼 너무 많이 돈이 몰렸다고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불완전 판매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신탁을 제외한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업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끝으로 현행 상호금융업권 감독 및 조치에 대한 법령 체계를 존중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023-03-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든 상호금융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규정함 (안 제2조제6호 바목부터 차목까지 신설) ② 각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조합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안 제4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③ 각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④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안 제33조) 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부칙 제8조 신설) ⑥ 금융감독원의 인력·예산 등 검사 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의2 신설) ⑦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포함한 처분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명령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함 (안 제66조의2 신설)	
	•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5인)</u>」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등)	2023-03-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u>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여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음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023-03-06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 원 등 11인)</u>」 랜섬웨어란 사용자 접근 제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등을 암호화한 후 복구를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원인 분석,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규모 및 기업의 복구 현황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및 피해복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 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7 신설)	2023-02-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 원 등 10인)</u>」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선정성·폭력성 정보 등은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류·표시하여 성인 이용자에게 유통하고 있으며, 선정성·폭력성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영상물 제공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사전적·주도적 선택보다는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영상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2023-02-28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 원 등 11인)</u>」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6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2023-03-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4인)」 인공지능은 오늘날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으며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 특히 2022년 12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질문을 채팅하듯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에 맞춰 곧바로 답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공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으며, 난이도 높은 학술논문, 에세이, 시, 보고서 등을 단숨에 써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행해내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게 됨.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기술적 수준의 경이로움 너머로 개인정보의 침해, 알고리즘 왜곡으로 인한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보안 문제 증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의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윤리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③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 도모를 위함임을 명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5조)	2023-02-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의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사업화 등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⑤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그리고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이익제기권 및 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⑥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9인)」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개발인·기업연구자의 자금심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안 제2조)	2023-03-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국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기업연구소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5조) ④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조직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⑤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⑥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술개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21조) ⑦ 기업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기업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5조 및 제27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의무가 부과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자체제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3 신설)	2023-03-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 같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목적성을 명시하여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특수매체 기록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략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2호·제6호·제7호, 같은 조 제7호의2 신설)	2023-02-2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2023-03-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와 달리 타 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총 253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총 86건으로 30% 이상이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추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안 제 10조의8 신설)	2023-03-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관들은 기존의 채용 방식에 비하여 새로운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입하나, 아직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차별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절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4조의4 신설 등)	2023-03-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22인)」 현행법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원의 집행부인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임 그러나 노동조합의 임원이 조합비 횡령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2023-03-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있음. 법령·계약 등을 위반한 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직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직무에 적합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같이,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최근 ESG의 확산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과 같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현행법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행정 조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시정권고로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해당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정착되도록 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벌금형보다 경미하지만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안 제16조의10 등)	2023-03-07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3/6(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4호)」 발간	
국회도서관	3/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6호 발간 -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	
	3/9(목)	「현안, 외국예선」 제55호 발간 - 미국의 교육저축계좌(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	
예산정책처	3/6(월)	「NABO Focus」 제57호 발간 -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입법조사처	3/7(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2호 발간	
미래연구원	3/6(월)	「이슈와 논점」 발간 -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3/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 발간 -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전략과제 도출	

【별첨1】 제404회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3/9(목)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3/9(목) 14:00	전체회의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공청회
교육위	3/9(목) 10:00	전체회의	- 현안질의
정보위	3/7(화) 14:00	전체회의	- 국정원 업무보고,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6(월) 10:00	<u>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u>	박용진·박성준·소병철· 양정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3/6(월) 14:00	<u>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u>	권성동·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7(화) 10:00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이종배·김정재· 김종민 의원실, 국민일보	의원회관 3세미나실
3/7(화) 13:30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서영석·정춘숙·강훈식· 최영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3/8(수) 10:00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이원욱·김석기 의원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3/8(수) 14:00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	이원욱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3/8(수) 14:00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3/8(수) 14:00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 -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모색	박주민·민병덕 의원실, 민주연구원 등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3/9(목) 10:00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 미나	김성원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9(목) 14:00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김형동 의원실,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3/10(금) 14:00	소형원자로(SMR)산업 육성·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안호영·위성곤· 신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3/2(목)	「Data & Law」 1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국회의원 선거	
입법조사처	2/27(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주취자(酒醉者)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미래연구원	2/2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 발간 -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28(화) 10:00	<u>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u>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8(화) 10:00	<u>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u>	소병훈·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2/28(화) 15:30	<u>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u>	강민국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목) 10:00	<u>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발전계약 최소화</u>	한무경 의원실, 전기신문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목) 14:00	<u>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u>	김상희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3/2(목) 14:00	<u>해운-조선-금융 상생 국회정책세미나</u>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3(금) 10:00	<u>방사능 공포괴담의 진실과 과제</u>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